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1 | 2025.12.15 (2025.12.08~2025.12.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유통 前 사전 방지, 유통 時 신속 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디지털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며,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교육위>, <행안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며, **<과방위>**에서는 AI 제정법 관련 입법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7
-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 ····· 8
-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 1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1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 1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 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 17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 17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 1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 1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 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 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 21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22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 22
-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 23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23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 24
-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24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 25
-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 2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6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 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28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 28
-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28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 3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3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 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코인 투자자들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코인이 상장폐지 되자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노동]**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및 기업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방송통신(TMT)]**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26. - 2025. 12. 9.)
- **[에너지·자원]**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 **[소송]**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 유통 前 사전 방지, 유통 時 신속 차단, 제재 강화·단속역량 확충 등	2025-12-10

정부는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음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①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前 사전 방지

- ㅇ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
  -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 ▲플랫폼社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 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
- ㅇ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6.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②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時 신속한 차단

- ㅇ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
  -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
- ㅇ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의 플랫폼社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절차(안)] 관계당국이 방미통위에 요청 → 방미통위는 플랫폼社에 임시 시정 요청 → 플랫폼社는 시정조치 이행 → 방미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차단확정 or 원상복귀
- ㅇ 아울러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③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및 단속역량 확충

- ㅇ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제재
-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

ㅇ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발표** - 향후 5년간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실행 중심의 해상풍력 이정표 제시 - 기반시설 확충으로 2030년 누적 10.5GW(보급·착공), 2035년 누적 25GW 이상(보급) 추진 - 발전단가(kWh) 단계적 인하로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 목표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연내 조기 출범, 인허가 밀착지원·사업기간 단축 - 20MW급 국산 터빈 개발, 부유식 기술 실증, 지역상생·바람소득 표준 본보기 마련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함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함.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그쳤으나,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하여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함

설치선박(WTIV)도 민간,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임.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함.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확보,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하여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함. 발전사업이 허가된 모든 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군작전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내년(2026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함

또한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이 나아갈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할 예정임.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조기 출범시킬 계획임

이 추진단은 당초 2026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현장의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 훈령을 통해 올해 안에 조기 가동한다고 밝힘.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함. 보급 가속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임

정부는 보급 확대, 발전단가 인하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할 예정임.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테스트베드) 구축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조선·해양플랜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 발표** -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13개의 보안 요구사항 제시	2025-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힘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민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지침,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왔지만, 주로 인공지능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인공지능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업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이 보안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힘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인공지능 모델·시스템에 대해 보안 3대 요소(기밀성, 무결성, 가용성)를 기반으로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대상 인공지능 생애주기 전 단계* 보안 요구사항과 이용자의 인공지능 보안 수칙 등 총 1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 1) 개발자 생애주기 : ①계획 및 설계 → ②데이터 수집 및 준비 → ③모델 개발 → ④모델 배포 → ⑤점검(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⑥파기
2) 서비스 제공자 생애주기 : ①서비스 계획 및 설계 → ②서비스 개발 및 구축 → ③서비스 제공 및 운영 → ④서비스 유지보수 및 지원 → ⑤환류(피드백) 및 서비스 개선 → ⑥파기

구체적으로는 모델 개발 단계에서 인공지능 모델 위험 관리, 데이터 암호화,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보안 내재화(Secure by Coding)를 실현하기 위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서비스 이상 행위 탐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인터페이스 보안, 백업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복원력 관점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중요 정보 입력금지, 인공지능 악용 금지 등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수칙을 제시하였음

이번 보안 안내서는 국제 기준 및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보안 요구사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내 모델뿐만 아니라 해외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국제 규범 간 호환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5-12-09 시행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1 시행 예정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21027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를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사무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를 2급 이상 직원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는 대상도 1급 이상 직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2-10 시행 예정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납세 대상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2-09 시행

항만운송사업자 등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기간 산정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폭설·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해당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5.12.09. ~2026.01.19.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준·절차, 공동접속설비 설치 대상,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단지 운영,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 (전화: 044-203-5387, 팩스: 044-203-4769)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8. ~2026.01.19.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재료에서 내부의 천장·반자·벽·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8, 팩스: 044-201-5576)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2.08. ~2026.01.19.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유형별로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재건축진단의 면제·완화를 적용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유형 및 요건을 구체화하며, 과도한 구역 분할 방지를 위한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화된 재건축진단 실시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전화: 044-201-4924, 팩스: 044-201-5910)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5.12.11. ~2026.01.20.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전화: 044-201-3722, 팩스: 044-201-565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2조의2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2025-12-08 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전에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사보고서의 근거 규정, 작성 및 송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심사보고서가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른 절차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사보고서의 작성·송부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실의 확정·위법성 판단·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2025-12-09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개 분야 24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등의 업종에 대해 상세 가격 및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 적용 업종 및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12-09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거래상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거래상 종속성이 심화되는 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중지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및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고자 함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시정명령·동의의결·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2025-12-09 발의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음식배달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등 공정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음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음식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완화 효과는 없었으며, 그 사이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도·소매 업종까지 배달사업을 확장하고 광고비를 인상하는 등 독과점 남용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음. 이러한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확대를 위해 무료배달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여 수수료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구조, 독과점 정도, 이용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비용 전가에 대한 규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특히 시장지배력이 큰 음식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수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실제로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폭리 문제에 대응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성공적인 입법 경험이 있음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대한 이용사업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음식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공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5-12-10 발의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6인)	2025-12-10 발의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9조의12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025-12-10 발의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함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기만적·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해지·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안 제2조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2025-12-11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8 신설)**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025-12-11 발의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025-12-11 발의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025-12-12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및 IT 기업들은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와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금번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실정임.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4%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 관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지우거나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2025-12-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행정안전위원회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5인)	2025-12-08 발의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재해보험법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5-12-11 발의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척도로써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은 물론, 민간에서의 연구 및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12-08 발의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른바 OTT 영화는 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러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이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유통 구조가 극장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내용은

①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제12호의2)**

②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해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제와 영화업자 신고 의무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영화업 신고 의무와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 (안 제3조의11 신설 및 제2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2025-12-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8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5-12-10 발의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2025-12-12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2025-12-08 발의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모바일·5G·메타버스·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하고 있고, 건강관리를 통한 수명 연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산업이 기업의 생존·발전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가속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한정된 의료자원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차세대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 등 다양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디지털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비의료,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공지능·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디지털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디지털헬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협력과 정책 추진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디지털헬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이에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디지털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호 및 활용 원칙을 마련하며, 디지털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12-10 발의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4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12-12 발의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2025-12-08 발의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도급인까지로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제5항·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2025-12-09 발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열에너지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2025-12-10 발의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이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재생열·미활용 폐열 등 '청정열'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급, 그리고 전력과 열 부문을 연계하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열에너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통계 및 수요지도 구축, 청정열 전환 지원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위성곤의원 등 11인)	2025-12-10 발의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절반 가량이 난방 및 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국내 역시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8% 수준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 배출량의 29.2%를 열에너지가 배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만 편중되어 왔으며, 정작 비중이 큰 열에너지 분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조차 미비하여 탈탄소화 전환 속도가 현저히 느린 실정임

이에 **열에너지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공급사업자 등에게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열(재생열, 미활용 폐열 등) 공급 및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울러, **열네트워크의 개방과 연결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청정열 공급인증서(REC) 거래 등 시장 기반의 이행 체계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12-11 발의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전용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도급인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단계에서의 책임과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고, 도급 구조 전체에서 관리비가 균형 있게 집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특히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안전관리의 실제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도급인에게만 적용되어 제도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핵심 예방 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2조 및 제17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025-12-12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12-08 발의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 제3항 등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2025-12-09 발의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025-12-12 발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 입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형태로만 건설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용적률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세대수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12/15(월) 14: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2소위	12/16(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17(수) 10:00	- 법안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	12/16(화) 10:00	-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12/17(수) 10:00	-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12/16(화) 13:30	- 법안 심사
	문화예술법안소위	12/18(목) 13:3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19(금) 10:00	- 법안 의결 및 상정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2/16(화) 14:00	-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2/15(월) 14:00	- 공청회(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심사
	전체소위	12/17(수) 10:00	- 법안 의결, 법안 상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5(월) 10:00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이학영·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5(월) 14:00	**베이커리 산업안전 및 근로교육 개선 정책 간담회**	오세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16(화) 10:00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박해철·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2/17(수) 10:00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AI 소셜 임팩트 포럼 토론회**	위성곤·김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17(수) 14:00	**디지털 철도건설 설계기준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철도 인프라**	손명수·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8(목) 10:00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맹성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19(금) 10:00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AI 대전환, 선언에서 실행으로 토론회 시리즈**	김한규·배현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19(금) 14:00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대외 정책과 향후 전망**	주호영 의원실	국회 본관 316호
자료집 등	12/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5-25호(통권 제288호) 발간**	국회도서관	
	12/17(수)	**「금주의 서평」 제2025-49호(통권 제758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3호(2025-23호)	국회도서관	
	1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7호(2025-2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8(월)	금융	코인 투자자들이 계획 유통량 위반을 이유로 코인이 상장폐지 되자 발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2/10(수)	노동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및 기업 대응방안
12/11(목)	지적재산권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특허침해 책임에 관한 UPC 항소법원의 판단 및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12/11(목)	방송통신 (TMT)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12/12(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26. - 2025. 12. 9.)
12/12(금)	에너지·자원	2025년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공고
12/12(금)	소송	해외주식형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투자설명서의 허위 기재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판매회사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